

심사대상 : 작업장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심사위원

성명	서명	안전 역량	안전수준				안전 성과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김 정 훈	김 정 훈	○	○				○
안 형 도	안 형 도	○	○				○

본 심사의 주된 사항은 개별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안전평가 결과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근거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기관 현황

기 관 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 관 장 (‘25년말 기준)		이종성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설립목적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											
주요역할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등											
기관유형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심사유형	I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100%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안전관리 등급	‘25년도(예비)				‘24년도				‘23년도			
	종합	역량	수준	성과	종합	역량	수준	성과	종합	역량	수준	성과
	4	4	4	2	-	-	-	-	-	-	-	-

II 총 평

- '25년 기관의 종합 등급은 4등급이다.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은 4등급 수준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역량)** 4등급으로 심사되었으며, '체계역량' 분야의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지표와 '관리역량' 분야의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지표에서 가장 낮은 득점을 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안전수준)** 4등급으로 심사되었으며, '작업장' 분야의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지표에서 가장 낮은 득점을 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안전성과)** 2등급으로, 사고사망자 발생이 없었다. 사망사고 감소 성과 및 노력이 우수하여 지속적인 안전보건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범주별 개선 필요사항

○ 안전역량

개선 필요사항

1. 평가척도 구체화 및 안전보건총괄자 평가 실시 필요
2. 간헐적 활동이 아닌 정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연간 안전활동 계획 수립 필요(안전보건활동 작동성 이행을 위한 설계, 안전경영을 위한 임직원, 수급업체, 발주현장 이행관계자 등과 안전보건 현안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및 운영 및 필요)
3. 최고 경영책임자의 관리책임자 지정과 의무 등에 대한 기관의 규정 및 시행규칙 등 개정을 통해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 강화 필요
4. 안전관리 전담조직인 '안전보건팀'의 인력과 지원 등을 강화하고, 기관의 안전보건 총괄 업무 외에는 별도로 분리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전담토록 조정 필요
5. 안전근로협의체와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 개발 및 운영 필요
6. 재난·재해예방 및 안전보건활동의 세부 추진과제별 예산 편성 및 안전보건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수급업체의 '관리비용 예산편성 기준' 포함) 필요
7.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본부의 안전보건팀 주관 관리검토 필요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내용 혼선방지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 필요
9. 안전보건 관련 지침서 등 개정 시 관련 내용을 산하기관에 전파, 공유 필요
10. 산하기관에서 실시계획 작성 시 순회점검, 유해요인조사 등 담당자를 지정하여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가급적 전체 인원이 참여 필요
11. 사전준비활동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행점검 강화와 실행절차의 관리가 필요
12.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성평가 최초평가 실시시기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등)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정기평가 실시시기는 최초평가 일 기산 1년 이내 등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시행 필요
13. 검진 결과의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사적인 사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며, 근로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14. 신규 직원 및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에 대한 법정교육 실시 및 이력관리 필요
15. 교육의 계획단계부터 점검 및 환류 계획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교육 실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된 교육이 누락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의 내실화 필요
16.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에 대한 구성원의 안전보건경영 추진방침을 이해 및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주지 필요

개선 필요사항

17. 기관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재해 예방 관리 및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 이에 대한 개선 필요
18. 규정 및 시행규칙, 기준 등을 위험의 사각지대와 실무의 장애가 없도록 기관의 특성 및 직제규정 등을 반영하여 검토·개정하고, 이를 부장급 이상의 상위 직급의 결재를 통하여, 전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19.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를 계약담당자, 안전담당자 모두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본부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교육하여 현장작동성 제고 필요
20. 현장은 도급사업의 현황관리를 본부 제공 양식을 통해 바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혼재작업 여부, 작업계획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위험기계기구 등을 추가(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여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도록 개선 필요)

○ 안전수준

개선 필요사항

[작업장]

1. 공간 제약이 없을 시 말비계 등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모를 사다리 비치 장소 근처에 비치하고 2인 1조로 작업
2.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는 관련 법에 의거 MSDS 경고표지나 문구 등을 부착
3. 개인보호구 자체 교체 기준 수립(주기적 교체 필요) 및 화학물질별 환기장치의 종류에 따라 노출여부 검토 필요(환기장치 개선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방독마스크 지급 포함)
4. 기계·기구·설비(컨베이어 등)의 방호장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보건표지 부착 필요
5. 저수조 주변 및 작업자 접근 가능 구역에 법적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 설치 및 기계실 배관 통로의 사다리에 잠금, 접근통제 시건장치 등 추락재해 예방조치 필요
6. 설치된 매립형 소화기 바닥 등에 색채 및 표시를 통해 화재 등 위험사항 발생 시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7. 기계실 가스 밸브에는 가스범위 및 위험표시를 표기하여 작업자 및 비상상황 대응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8. 현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공간에 대해 사용위치, 장소, 작업 등을 조사하고, 보유한 복합가스농도측정기에 대해, 측정기기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방법 등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 필요

개선 필요사항

9. 기관 및 현장은 안전작업허가제가 다른 안전보건조치와 종합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등을 수립하여, 현장 안전실무자, 안전관리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작동성을 강화 필요
10. 1회성 또는 단발성 위험작업에 대해서도 안전작업허가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필요
11. 방문하는 사업장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규정, 지침 또는 계획 등을 교통안전과 산업안전에 모두 포함하여 보완 필요

○ 안전성과

개선 필요사항

1. 성과측정 결과를 통한 인사평가 보상(문책규정, 인센티브 등) 체계 마련
2. 콘센트 접지 및 통로상 장애물(배관 등)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필요
3.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임원 등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도구 개발 필요

IV 심사 결과

구 분		등급
종합등급 (1,000점)		4
① 안전역량 (300점)		4
② 안전수준 (350점)		4
위험요소별 등급	작업장	D
	건설현장	비해당
	시설물	비해당
	연구시설	비해당
③ 안전성과 (350점)		2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안전역량 [300점]	① 안전역량 배점 및 등급		300	4
	1. 체계 역량	소 계	140	E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30	D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	E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D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20	D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20	D
	2. 관리 역량	소 계	160	D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30	D
		②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20	D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20	D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20	C
		⑤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70	E
안전수준 [350점]	② 안전수준 배점 및 등급(분야별 가중치 적용)		350	4
	1. 작 업 장	【작업장 안전관리】	350	D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60	E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20	C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90	D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80	D

※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안전수준 [350점] ※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2. 건설 현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350	비해당
		①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체계	20	비해당
		② 건설공사의 착공 전 안전보건활동	50	비해당
		③ 건설공사의 착공 후 안전보건활동	80	비해당
		④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여건	25	비해당
		⑤ 건설안전 환경 조성	70	비해당
		⑥ 안전시공 작동 수준	105	비해당
	3. 시설물	【시설물 안전관리】	350	비해당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20	비해당
		②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20	비해당
		③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40	비해당
		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수준	90	비해당
		⑤ 시설물 사고 및 안전성능 수준	30	비해당
		⑥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40	비해당
		⑦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40	비해당
		⑧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70	비해당
	4. 연구 시설	【연구시설 안전관리】	350	비해당
		①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조성	50	비해당
		② 연구실 연구장비 위험방지	40	비해당
		③ 연구실 전기설비 위험방지	40	비해당
		④ 연구실 시약류 취급 및 보관	50	비해당
		⑤ 연구실 화재 예방	40	비해당
		⑥ 연구실 고압가스 취급 및 보관	50	비해당
		⑦ 연구실 연구환경 및 연구자 보호	40	비해당
		⑧ 연구실 생물체(LMO) 감염 예방	40	비해당
안전성과 [350점]	③ 안전성과 배점 및 등급		350	2
	공통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수준	60	결측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100	D
		③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40	C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50	A

※ 등급부여 기준(100점 기준 환산점수 적용)

구 분	총 점	1등급(A)	2등급(B)	3등급(C)	4등급(D)	5등급(E)
배 점	100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1 「안전역량」 범주 심사

1. 체계역량
2. 관리역량

1. 체계역량

【1】안전보건경영 리더십

핵심가치

최고경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기관의 사업특성과 제반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공유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다. 1990년에 설립되어 대한민국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사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취임 후 2차례에 걸쳐 ‘안전보건환경경영방침’을 개정하는 활동을 하며 안전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관장은 ‘중대재해 ZERO’를 위한 안전경영선포식을 개최하며 안전경영에 대한 의지를 전 구성원과 공유하였다.

기관장은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및 교육실시를 지시하였으며, 직업능력개발원 및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안전점검 실시를 지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기관장은 소속기관장 회의 및 주간회의를 통하여 기관의 안전보건 현상을 파악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대응 수준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기관장은 KEAD 안전경영 워크숍을 통하여 안전경영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수급업체를 포함한 건강한 일터 캠페인 행사를 운영하여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기관은 사내포털을 통하여 안전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례회의(KLP)를 통하여 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을 소통하고 해당 내용을 사내망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다만, 기관의 안전보건활동을 전체적으로 기획, 관리, 점검하여야 하는 본부 안전보건팀이 현재 팀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관의 전반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안전보건경영 리더십이 전체 조직의 안전보건활동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전보건활동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안전보건팀의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안전조직 및 구성원의 업무충실도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가 진행되었지만, 안전보건총괄자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평가의 취지가 개별 구성원에

대한 업무수행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구체적인 평가척도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기관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예방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진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경영진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을 변경하였지만, 안전보건경영방침과 환경경영방침을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구성원, 수급업체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립되어야 하나, 기관은 안전보건환경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수립된 안전보건환경경영방침이 조직이 가진 전략목표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 과정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기관은 공공기관이 지닌 책무에 의하여 기관과 관계된 이해관계자와도 안전보건 현안 사항에 대하여 공유하고 현장에서 도출된 중요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나, 기관은 이해관계자와의 안전보건 현안 사항 공유 및 이행지원 활동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기관장은 지속가능한 안전보건경영을 위하여 간헐적 활동이 아닌 정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연간 안전보건활동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며, 기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안전보건활동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경영을 위하여 임직원뿐만 아니라 수급업체, 발주현장, 이해관계자와도 끊임없이 안전보건 현안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평가척도 구체화 및 안전보건총괄자 평가 실시 필요
2. 간헐적 활동이 아닌 정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연간 안전활동 계획 수립 필요(안전보건활동 작동성 이행을 위한 설계, 안전경영을 위한 임직원, 수급업체, 발주현장 이행관계자 등과 안전보건 현안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및 운영 및 필요)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 업무 총괄 권한 부여 등) 구축하고,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동기부여 등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등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하위에 시행규칙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기획관리이사, 본부는 실·국장, 그 외 일선기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원장 등이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부는 실·국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기획조정실장이 본부의 관리책임자이며, 타 실·국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에 따라, 같은 실·국장급이라도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작동된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안전관리 전담조직은 ‘안전보건팀’이며, 개발원마다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 1명씩 배치되어 있고, 일선기관(지사)에는 안전관리실무자라는 일반 행정직이 업무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팀 및 개발원의 안전관리자들은 최소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안전관리자 직무교육과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였다.

기관은 「규정 제16조」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제출 알림’이라는 공문을 최소 개최 7일 전에 안내하여, 부의 및 안전에 대한 의견을 참석자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차회 산보위에서 전회 안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보고하였고, 특히, 4회차(4분기)에는 최고경영자의 대면 참석과 더불어, ‘세부 과제 추진현황’이라는 표를 작성·정리하여,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였다.

다만, 규정 및 하위 시행규칙에 최고경영자가 관리책임자의 역할 지정과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기획관리이사가 ‘기관의 관리책임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본부는 기획조정실장, 각 일선에는 일선기관장, 개발원은 원장이 관리책임자를 맡고 있음에 따라, 최고경영진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의무 등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규정 및 하위 시행규칙 등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안전관리 전담조직인 ‘안전보건팀’의 경우, 1명이 보직상 ‘팀장’을 맡아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의 안전보건 총괄 업무 외에도 본사 안전관리 실무,

시설물, 소방, 정부공개, 국정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등 천여 명이 넘는 기관의 규모와 인력 및 업무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기관의 안전관리 총괄업무를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안전보건팀 및 안전관리자 등 기관 안전관리 인력의 경우, 직제·인사규정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별정직으로 일반직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으며, 그 외 지원 등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업무연속성과 역량강화, 우수인력 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보위 운영에 대해서는 일부 서면으로 개최·운영되었으며, 이해관계자에 대해 사전 안전제출 공문 외에는 추가적인 의견청취 노력이 없음에 따라, 최고경영진이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적극적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기관은 규정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최고경영진의 관리책임자 지정과 의무 등을 명시하고, 기관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가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평가 등에 안전보건활동 등을 반영하기를 권장한다. 또한, 안전관리 전담조직인 ‘안전보건팀’의 인력과 지원 등을 강화하고, 기관의 안전보건 총괄 업무 외에는 별도로 분리하여, 기관 전체의 안전보건활동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직군과 ‘장애인 고용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함께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를 권장한다.

그리고 기관은 안전관리중점기관이 아님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와 안전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산보위가 주로 서면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채널이 없음에 따라,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안전근로협의체와 안전경영위원회를 운영하거나 그 외 방법 등을 강구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4분기부터 기관장이 산보위를 참석하고, 안전보건팀 및 개발원의 안전관리자들과 간담회 등을 운영한 것은 고무적인 사항으로 향후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보건활동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최고 경영책임자의 관리책임자 지정과 의무 등에 대한 기관의 규정 및 시행규칙 등 개정을 통해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 강화 필요
2. 안전관리 전담조직인 ‘안전보건팀’의 인력과 지원 등을 강화하고, 기관의 안전보건 총괄 업무 외에는 별도로 분리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전담토록 조정 필요
3. 안전근로협의체와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 개발 및 운영 필요

[3] 안전보건경영 투자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기관의 고유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관의 예산 편성 주요 절차는 세부사업별 특이소요 발굴 및 예산요구, 실행예산 편성검토, 실행예산 편성, 실행예산 확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기관의 예산편성은 기관의 고유 주요 사업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재난·재해예방 및 안전보건활동의 세부 추진과제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기관이 수급업체의 ‘관리비용 예산편성 기준’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한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기관은 정부의 예산집행 지침을 준용하여 기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기관은 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사회 안전 의결을 통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관리 및 검토를 하고 있다. 기관은 본부 및 개발원 부문 예산관리자 소관으로 반기별 세부사업별 지출부 자체 전수조사, 시정조치, 결과 제출 및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관은 ‘예산집행지침’내에 예산배정 재배정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배정을 위하여 각 소속기관에서 본부 예산관리자에게 재배정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본부 예산관리자는 각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재배정 요구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 재배정 내역서에 따라 재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안전보건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본부의 안전보건팀이 주관하여 전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소요예산 편성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 측면에서도 본부의 안전보건팀이 소속기관 전체의 안전보건 예산을 관리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재난·재해예방 및 안전보건활동의 세부 추진과제별 예산 편성 및 안전보건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수급업체의 ‘관리비용 예산편성 기준’ 포함) 필요
2.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본부의 안전보건팀 주관 관리검토 필요

【4】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안전관련 법령*의 요구사항과 기관의 위험요인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 및 하위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및 절차서·지침 등의 관리를 위한 제·개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심사의견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상황에 맞게 규정, 시행규칙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기관장의 결재를 통해 개정하였고, 4차에 걸친 노사대표가 참여한 산보위에서 규정 개정을 포함한 기관의 산업안전보건활동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그러나 4차 산보위를 제외한 1차~3차 산보위의 의결방식이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직원 및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안전을 산보위에서 협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 기관에서 시행되고 보고된 '25년도의 각종 안전보건관련 문서에서 현재 규정 상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기획관리이사 및 기관장의 지시 및 보고내용은 규정 개정 시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 기관의 「규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 관리책임자는 기획관리이사로, 본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본부 실·국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는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작업환경개선 등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본부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간 직무 내용이 경합하고 있어 업무내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기관은 상반기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산하기관에 이를 시행하여 공유하였지만, 하반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개정 시 이를 산하기관에 공유하지 않았으며, '25년도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리지침'을 시행하여 산하기관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았으나 관련 내용을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향후에는 안전보건 관련 지침서 등 개정 시 관련 내용을 산하기관에 전파, 공유하여 직원 또는 관계수급인이 각종 안전보건활동 추진 시 이를 활용할 수 있길 바라며, 산하기관에서 발굴한 각종 유해위험요인은 경영진이 확인, 검토하는 환류과정을 강화하길 바란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내용 혼선방지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 필요
2. 안전보건 관련 지침서 등 개정 시 관련 내용을 산하기관에 전파, 공유 필요

【5】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조직·업무 특성, 사고통계 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목표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8. 목표 및 추진계획관리)」에 의거하여 안전보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 설정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최우선 경영을 통한 중대재해 제로 달성’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3대 추진전략과 36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특히 훈련생 안전 확보 및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와 같이 기관의 고유 사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 관리 과제를 발굴하여 계획에 포함한 점은 기관의 안전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작성된 계획은 산보위(2025. 12. 22.)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식화되었으며, 전사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하였다.

안전경영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경영책임계획 작성가이드」에 따른 4대 구성항목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으며, 본부를 중심으로 6개 개발원의 안전보건 목표를 취합하여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인 실행과제별 추진계획서(2025. 2. 14.)에는 담당 부서, 소요 예산, 성과지표, 추진 일정 등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으며, 관리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계획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자 간담회(2025. 9. 30.~ 10. 1.)를 통해 중장기 안전경영 추진계획 및 수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계획에 투영하려는 노력이 확인되었다.

2. 관리역량

【1】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직영·도급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적절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가 전 단계에서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 결과 공유 및 활용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25년 10월 말 주무부처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기관은 체크리스트법에 의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총 261개의 허용불가능한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250개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본부의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에 사전조사서(공정별), 사전회의 및 순회점검표, 부서별 유해위험요인 조사표(직원, 훈련생 포함), 위험성 평가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결과, 사후교육 결과보고 양식이 첨부되어 있어, 산하기관에서 통일된 양식과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일에 제출한 본부, 고용개발원, 4개 직업능력개발원, 3개 지역본부, 지사의 위험성평가표를 통해 각 기관의 실시계획 등 단계별 수행내역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잠재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소명자료를 통해 전년도 발굴한 야차사고 사례를 익년도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에 포함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부 위험성평가의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한 조사표제출 방식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발굴 대상 업무가 사무행정업무, 콜센터상담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경비, 미화, 시설관리, 운전, 수영장 안전관리, 안내, 전산관리 등 기타 분야의 순회점검이나 유해위험조사 결과에 따른 위험성평가도 추가하기 바란다. 위험성 결정 수준은 순회점검표, 유해위험조사표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해당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산하기관에서 실시계획 작성 시 순회점검, 유해요인조사 등 담당자를 지정하여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가급적 전체 인원이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우선 순위 결정 시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에 의해 결정해야 하나, 기관이 수행하는 체크리스트법은 위험성 결정의 신뢰성, 일관성이 높은 반면,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추락, 질식, 감전, 화재폭발 등 고위험요인에 대한 우선조치 기준을 실시 규정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주공사의 위험성평가 및 위험공정 등에 대한 사전점검 등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개발원의 청사 체육관 방수공사(11. 17.~11. 28.)시 수급업체의 고소작업 안전작업허가 신청(승인)서에 대한 도급자의 결재 등 검토과정이 생략되어 있으며, 해당 작업이 사다리차를 이용하고 있고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특별교육 대상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 공사의 위험성평가표에 고소작업에 따른 ‘작업중 자재가 보행자에게 맞음 위험’이 위험등급 ‘상’으로 평가되어 있고 감소대책이 ‘감시자 배치’라는 관리적 대책으로 되어 있어 TBM 실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파 및 교육해야 하나 TBM 회의록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위험성평가표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사전 검토와 결재,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이행계획서, 공사현장 안전조치 준수현황 점검표에 대한 결재 내역은 없었다.

기관은 중대법 및 「규정 시행규칙 제25조의2(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따른 반기 1회 이상 이행점검을 위해 산하기관의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본부 관리책임자(기획조정실장)에 상반기 실적을 보고하고 있지만, 점검결과가 체크리스트법에 의한 ‘O’ 또는 ‘X’로 되어 있어 관리책임자가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PDCA 과정을 통해 환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경영자 검토는 위험성평가 결과보고로 갈음하고 있지만 기관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를 본부 관리책임자나 공단 관리책임자, 기관장에 보고하여 검토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이행점검을 위해 상반기 별도계획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취합하고 있으나, 산하기관이 매월 실시하는 KEAD 안전점검의 날 중 상반기 특정 월에 위험성평가 및 반기 1회 점검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공단 관리책임자 또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중처법 등 관련 조항에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

대전지역본부(이하 ‘대전본부’라 한다)와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이하 ‘경기개발원’이라 한다)는 위험성평가 정의 및 추진목적, 추진근거, 추진방침, 실시대상, 실시체계 등을 포함한 본사 실시계획에 따라,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이행하였으며, 대전본부의 경우에는 대전본부(본청),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이하 ‘대전훈련센터’라 한다),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이하 ‘세종훈련센터’라 한다) 등 개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였다.

대전본부와 경기개발원(이하 ‘현장’이라 한다)은 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조직을 구성하고, 본부 주관으로 안전관리자와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전본부, 대전 및 세종센터는 자체 실시계획에 따라 사전준비활동 및 위험성평가 실시방법과 세부 추진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부서별 근로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자 주관 순회점검 방식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였다. 반면, 경기개발원의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해당 교육 내용을 토대로 전 근로자 대상 위험성평가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 유해요인조사를 위하여 작업별 기계기구 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파악하고,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 독려활동의 일환인 아차사고 발굴제안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개선 전·후 위험수준 확인 활동은 유해위험요인의 사전발굴 및 위험수준 감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장은 위험성평가 기법인 ‘체크리스트법’을 준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수준을 ‘보완’으로 결정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은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으로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었다. 또한, 경기개발원은 운영 중인 ‘안전제안함’을 활용하여 아차사고 발굴제안서를 상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발생한 아차사고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전·후 위험수준을 파악하고 있는 점은 위험성평가에 대한 근로자의 활동을 독려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현장의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 직원에게 공람하고, 위험성평가 실시사항 및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후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였다.

다만, 대전본부는 근로자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인 ‘안전소통방’과 기관별 자체 신고제안 제도, 직원·훈련생 대상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및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서 등이 유해위험요인 사전조사 활동에 활용되지 않았으며, 위험성평가 사전교육 및 사업장 순회점검 미참석자 대상으로 실시한 공유내용과 청사 내 게시판 혹은 ‘안전소통방’을 활용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대전훈련센터의 경우 교보재로 보유·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결정이 실시되지 않는 등 위험성평가 절차의 이행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기개발원의 경우, 위험성평가 최초평가가 실질적인 사업개시일 1개월 이후에 실시되었고, 안전관리자 주관 전 근로자 대상의 위험성평가 사전교육을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일지에서 교육참석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명확한 참석인원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접수된 아차사고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빈도강도법) 및 수시 위험성평가(상중하 3단계 판단법)는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 평가기법과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 더불어, 대전본부와 경기개발원은 위험성평가표에 현재의 안전보건조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적절하게 안전조치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조치의 누락 가능성이 있으며,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방법에는 ‘위험수준이 높은 항목부터 즉시 개선조치를 실시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나, 위험수준 산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대전본부는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서, 직원·훈련생 대상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등 사전준비활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작업뿐만 아니라 교보재로 활용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행절차의 관리가 필요하며, 위험성평가 결과는 전사 근로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길 바란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성평가 최초평가 실시시기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등)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정기평가 실시시기는 최초평가 일 기산 1년 이내 등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시행되도록 하고, 경기개발원의 안전관리자 주관으로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근로자 대상 위험성평가 사전교육 실시 시, 교육참석자 서명 등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통해 교육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바란다. 또한, 아차사고 발굴제안서 및 수시평가 등의 개선 전·후 위험수준 산정방법을 규정, 시행규칙의 위험성평가 기법 및 판단기준을 준용함으로써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길 바란다.

추가적으로, 보유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무시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안전·보건조치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한 현재의 안전보건조치를 파악하고, 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통해 허용가능한 수준의 위험성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락, 감전, 화재·폭발, 질식위험·산소결핍 등 고위험 유해·위험요인의 이행 기준을 마련하여, 규정된 기준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활동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산하기관에서 실시계획 작성 시 순회점검, 유해요인조사 등 담당자를 지정하여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가급적 전체 인원이 참여 필요
2. 사전준비활동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행점검 강화와 실행절차의 관리가 필요
3.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성평가 최초평가 실시시기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등)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정기평가 실시시기는 최초평가 일 기산 1년 이내 등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시행 필요

[2]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노동자의 건강 유지·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과 더불어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와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작업환경측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 현행화 등을 통해 기본적인 보건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작업환경측정 결과 측정 항목 모두 노출 기준 미만으로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점과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시 구성 성분별 규제 여부를 통합 검토한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옥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한랭 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기후 요인에 따른 건강 장애 예방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한편, 기관은 ‘2025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보건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보조도구 보급과 예방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비상대응장치 설치 및 헤드셋 지원 등 직무 특성을 고려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아울러 개인 심리 상담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근로자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식단 제공 등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근로자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일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기관 차원의 결과 수집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아 진단 결과가 취합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야간작업 및 유해물질 취급 공정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대하여 배치 전 건강진단의 수행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개선이 요구된다.

게다가, 배치 후 건강진단의 결과는 판정 등급별 인원 파악에 그치고 있어 질환 유형별 상세 분류를 통한 정밀한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각 사업장 별로 사후관리 상담은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본부 차원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로 전사적 이행 관리가 어려우며,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관 차원의 독려 활동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검진 결과의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사적인 사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며, 근로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자 건강 유지 및 증진 관리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검진 결과의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사적인 사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며, 근로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 참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지식 습득 및 실천을 통한 안전보건인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직원 및 작업장 노동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신고·제안·포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규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안전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근로자 교육과 직무교육 및 전문화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직전 연도 실시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도 반영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근로자 정기교육의 경우 대상별 교육 시간을 준수하여 반기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또한, 지사별 현행 목록에 따라 대상자와 내용을 적절히 구성하여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안전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전문화 교육을 지원한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정 교육의 이행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채용 시 교육과 관련된 현장 교육 일지 및 교재의 구성은 적절하였으나 당해 연도에 입사한 대다수의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안전보건관리조직 상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인력에 대한 교육의 실시 이력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더불어 교육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확인된다. 현재의 교육 계획 내에는 만족도 조사 등 성과점검과 이를 차기 계획에 반영할 환류 방안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주관하는 집체교육의 경우, 전담조직의 통합적인 이력 관리가 부재하고 결과 문서만 사후에 취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수동적인 관리 방식은 교육 누락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여 보완하는 것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교육의 계획단계부터 점검 및 환류 계획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교육실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된 교육이 누락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

한편, 관리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및 참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시행하였다. 관리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양호했으나 관리감독자로서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임무에 대한 숙지 상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통해 직무 이행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지수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참여하여 발굴한 유해위험요인과 실시된 감소대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상사태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적절한 이해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규정에 근거하여 안전보건 신고제안센터의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사내 망 내 ‘안전소통방’을 통하여 신고 및 제안 시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오프라인 안전신고 제안함을 추가 설치하여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안 제도 고도화를 추진하여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아차사고 발굴대회와 안전·보건·환경 우수사례 공모전을 시행하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기관별 우수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다수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등급별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구성원의 자발적인 안전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효과적으로 부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상시 제안 채널의 실제 운영 및 이력 관리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아차사고 발굴대회와 같은 단발성 캠페인 외에 평시 상시 채널을 통한 접수 실적 및 처리 현황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공모전 등을 통해 고취된 안전 활동에 대한 참여 의식이 상시적인 안전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신고·제안 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접수된 신고 제안 사항이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장은 본부의 안전보건교육 계획 중 자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으로 고용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 서울북부지사로 규정함에 따라, 경기개발원은 자체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였다.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의 근로자 교육과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등의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종류별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대상 및 교육강사 등 계획 수립 수준이 적절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대전지역본부는 본부의 안전보건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현장 근로자는 온라인교육으로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본부에서 미이수자 대상 메일과 문자를 발송하여 교육 수료가 완료되도록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개발원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시스템 현황관리를 모니터링하고, 미이수자 대상으로 메일을 발송하여 자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로 대전지역본부장, 대전지역본부 각 부서장과 대전·세종 훈련센터장을 지정하고 있으나 해당 인원내 대한 법정 직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기관 내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에 관한 점검 및 현행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교보재로 사용하고 있는 오븐크리너(세정제)는 피부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수립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전반적인 안전보건활동 인식과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결과,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조치방안과 안전보건제안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반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표된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구성원이 조직의 안전보건경영 추진방침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주지가 필요하다.

아차사고 발굴제도 및 안전보건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경기개발원은 안전제안함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금년도 2건의 아차사고 발생에 대한 제안서가 접수되어, 이를 위험성평가 사전준비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대전본부는 안전제안 등과 관련한 실적이 확인되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와 방안을 통해 근로자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길 바란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신규 직원 및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에 대한 법정교육 실시 및 이력관리 필요
2. 교육의 계획단계부터 점검 및 환류 계획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교육 실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된 교육이 누락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의 내실화 필요
3.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에 대한 구성원의 안전보건경영 추진방침을 이해 및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주지 필요

【4】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매뉴얼·절차서 또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화재·태풍·호우·대설·승강기에 대하여 비상시 대비 및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관은 2025년도 상·하반기에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에서는 고용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 6개소에서 기계실 저수조에서의 청소·점검 등 질식재해 예방에 대하여 훈련을 하였으며 송기마스크가 비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기관은 2025년도 소방 종합점검은 ‘2025. 1. 21.~2025. 1. 22.’ 실시되어 주차장 소화전 함 내의 소방호스 미비치 등 13건이 지적되어 개선 완료되었고, 소방계획서에 따라 자체 및 합동 훈련을 반기별로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와 관련하여 2025. 9. 29. 긴급 소방안전회의를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비상대응 체계 보완 방안 논의 등을 한 것은 우수한 점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재해나 사고 발생 시에 보고 체계가 구축·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 3년간 2023년도 5건, 2024년도 2건, 2025년도 0건의 산업재해가 있었다. 기관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재해 예방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에 대하여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은 아차사고 발굴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직업능력개발원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끼임·베임 사고 등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아차사고의 다수 발굴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기관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재해 예방 관리 및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 이에 대한 개선 필요

[5]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도급사업 시 수급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누락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업체(관계수급업체 포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규정 제34조(도급시 산업재해예방)」와 시행규칙 「제35조(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평가 선정기준 안내’(2024.10.23.)를 통해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 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지침서(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한 활동)」에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수급업체 현황관리는 본부 안전보건팀에서 안전보건관리 항목 위주의 양식을 시달하여, 연도별로 개발원 및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기관은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평가 선정기준 안내’(2024.10.23.)에 따라, 입찰은 나라장터의 첨부자료, 수의계약은 메일 등을 통해 안전보건수준평가와 기준, 양식(‘안전조치 이행계획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회계규정에 따른 평가기준표를 통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수행하는 등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일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점검조치(시행규칙 제37조의 6항)’에 따라 ‘공사현장 방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안전보건활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도급사업 혼재작업에 대해서는 지침서(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활동) 내 ‘5,6 혼재작업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조항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및 선정절차 계획에 포함된 ‘안전서약서’ 양식을 통하여 비상연락망 등을 수급업체와 공유하고 있다.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의 경우에는 일부 개발원 및 지사 등을 확인한 결과,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각 주기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보건협의체와 합동안전보건점검에 해당 일선기관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추가적으로,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상주 수급업체는 기관이 수행하는 6월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을 통해 기관의 위험성평가 양식에 따라 제출받고 있으며, 단기작업의 수급업체는 수시 위험성평가(상중하 기법)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기관에서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를 운영하는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평가 선정기준 안내’(2024. 10. 23.)에서 ‘위험작업 10가지 중 1회성이고 단기성 작업’은 절차 이행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위험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상시 및 다회성 위험작업 10가지에만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계획·지침 상 안전보건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평가 선정기준 안내’(2024.10.23.)는 기관의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상 이행방법을 구체화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24년에 부장급 결재에서 시행되었고, 내용에도 각 계약의 종류, 규모, 작업 등으로 상세 구별되어 작성되지 않아, 전사 실무에서 작동되기에는 이행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침서(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활동)」에는 ‘총괄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기관의 명확히 누구인지 여부와, 합동안전보건점검은 관리책임자(또는 대표)가 구성되어야 하나, 주관부서장으로 명시되는 등 기관의 직제규정과 관계 법령상 다소 맞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메일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및 안내 및 그 외 안전관련 양식 등이 제공된다고 하나, 제시된 메일 상에는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안전보건 수준평가의 경우, 평가표에 평가를 수행한 인원의 성명 및 서명과 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평가점수에 대해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 감소와 더불어 평가대상 수급업체가 보완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알 수 없어, 이를 작업 전에 보완·점검하기 어렵다. 그리고 작업 공사용역에 수행하는 ‘공사현장 방문 안전점검’ 외에 타 용역에는 보완사항을 조치하는 환류 활동이 없으며, ‘공사현장 방문 안전점검’도 시행규칙 상 강제성이 없어,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도급사업의 혼재작업 관리에 대해서, 기관은 혼재작업이 없다고 하였으나, 기관의 수급업체 현황관리 특성상 전사의 혼재작업을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규정 및 시행규칙, 지침서 등에도 구체적인 방법이나 양식 등이 없음에 따라, 추후 혼재작업 발생 시, 이를 실무자들이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중 수시 위험성평가(상중하 기법)에는 개선대책 이행을 확인하는 행위(확인서명이나 날짜 등을 기재하는 점검 행위)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일선에서 문서·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규정 및 시행규칙, 기준 등을 위험의 사각지대와 실무의 장애가 없도록 기관의 특성 및 직제규정 등을 반영하여 검토·개정하고, 이를 부장급 이상의 상위 직급의 결재를 통하여, 전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의 특성상 계약담당자와 안전담당자 간에 협조가 중요함에 따라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에 대해, 계약담당자, 안전담당자를 모두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본부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교육하여 현장작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수급업체 현황관리에 대해서는 양식에 작업별로 작업일시 및 장소, 혼재작업 유무 등 목록을 추가하여, 전사적으로 파악·관리하도록 하고, 추후 이를 보고(취합)받아, 향후 도급사업 안전활동에 기반(데이터)으로써 활용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 지침에 혼재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을 추가하여, 향후 혼재작업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에서의

사전 안내에 대해서는 제공 내용이나 양식 등을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남기기를 권장하며,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부서의 장)이 주관으로 하여 담당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그 서명과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기를 권고한다. 더욱이, 평가점수별로 ‘평가의견’을 기재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작업 전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업체의 작업이 이행된 이후에는 작업 중에도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구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단기작업의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확인을 철저히 하고, 그 확인여부를 작업허가서 등 양식을 통해 기록하기를 권장한다.

현장은 「규정 제34조(도급시 산업재해예방)」과 「시행규칙 제35조(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평가 선정기준 안내’(2024.10.23.) 계획에 따라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기관은 상·하반기 도급사업 현황을 보고하도록 현황관리 양식을 현장에 시행하였고, 현장은 반기별로 도급사업 보유 여부를 조사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각각 자체적으로 작성한 별도 양식(엑셀파일)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현장은 기관의 사정상 도급사업이 계약부서(담당)에서 체결이 된 후,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계약체결 후 평가 이전에는 ‘안전서약서’와 그 별지를 통해 위험성평가 제출과 안전점검 이행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경기개발원은 규정과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 세부 평가기준표’를 통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수행하였다. 더욱이, 경기개발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평가·검토함에 따라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어느정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급업체 혼재작업에 대해서, 현장은 금년도 혼재작업은 없던 것으로 파악되나, 추후 혼재작업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가를 중점으로 평가하였다. 현장은 기관의 「지침서(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활동)」 중 ‘5.6 혼재작업에 대한 안전보건확보’라는 조항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있는 ‘안전서약서’ 양식과 그 별지의 내용을 통해 비상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다. 더욱이, 대전본부는 ‘비상용 호출벨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장소(화장실, 사무실 등)에 비상호출벨, 수신기, 경광등을 설치하여, 청사 내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운영 및 이행에서 개발원은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개최·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개원 이후 관리책임자(원장)가 안전보건협의체와 합동안전보건점검을 모두 참석함에 따라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장의 도급사업 현황관리는 계약관리 내용을 위주로 작성되어 있으며, 본부에서 시달된 양식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업허가서 등 안전보건에 대한 항목이 일부 있었으나 혼재작업, 작업계획서, 작업장소 및 시간, 위험기계기구 등 항목이 없으므로 기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및 혼재작업 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은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및 수시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 등 대상이라도 1회성인 경우는 제외함에 따라, 일부 안전보건수준평가, 수시 위험성평가 및 작업허가서 등 안전보건조치가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장 안전실무자(대전본부), 안전관리자(경기개발원)는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안전보건 외부컨설팅, 안전실무 워크숍(자체 교육 등) 등이 없거나 교육 이수 등을 받지 못함에 따라 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그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확인 등을 전문성 있게 점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현장은 조달청을 통한 입찰을 제외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안전보건관리계획(양식) 및 위험성평가 제출 등을 평가 사전에 안내한 활동, 문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대전본부는 기관의 평가 이행 대상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으나, 대전본부에서 수행된 일부 도급사업에는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고, 일부 도급사업은 평가 대상이 아니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위험성평가서를 추가로 받는 등 기관의 평가 기준·절차에 따라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경기개발원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였으나 평가결과서(양식 등)에는 평가의견 등이 없어, 수급업체에서 차후 보완할 사항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어 환류 활동과 해당 점수에 대한 신뢰성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수급업체의 혼재작업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는 현장의 도급사업 현황관리(엑셀 파일 등)가 혼재작업 여부를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침서에는 ‘혼재작업에 대한 안전보건확보’라는 조항·내용이 있으나 이를 구체적 시행하는 방안 및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안전서약서’를 통해 비상연락처를 안내하나, 그 내용은 부서의 장(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의 전화번호 정도만 기재한 수준이다.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에 대해서, 대전본부는 기준에 따른 대상 상관없이 수급업체에게 위험성평가 이행결과를 받아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일부 확인한 결과, 위험성평가 내 개선대책 없거나 내용이 미흡하여 위험성평가와 그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확인·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장은 도급사업의 현황관리를 본부 제공 양식을 통해 바로 작성하여 현황을 관리하고, 현황관리는 혼재작업 여부, 작업계획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위험기계·기구 등을 추가하여,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여부를 관리 및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수시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 작업계획서 제출 등의 적용대상을 기관의 특성과 작업의 위험도, 성격 등을 구분하여 필요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도록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1회성 또는 단발성 작업이라도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또는 작업허가제도 등을 통해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안전실무자와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거나 기관 본부 등에서 수행하는 추가적인 조치인 안전보건교육,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실무 교육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그 밖에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기본 또는 실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계약 이후 적격수급업체 선정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은 본부와 협의하여, 도급사업 시 수급업체에게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와 점검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가 수급업체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시행규칙 제35조(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지침서(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활동)」 및 '안전보건적격수급업체 선정기준'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및 위생시설 등을 수급업체에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관은 상주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노동자 재난안전, 근골, 위험성평가 등 자체 교육자료를 작성·제공하였으며, '안전서약서'를 통해 위생시설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수급업체의 활용을 보장하였다. 더욱이, 본부는 '2025년 상반기 사업장 휴게시설 관리 현황점검 안내'라는 문서를 시행하여, 전사적으로 휴게시설 현황점검과 양식 등을 배포하여 수행·운영하였다. 수급업체의 특별교육 확인에 대해서는 일부 도급사업을 확인한 결과, 특별교육 이수증 등을 받아 첨부하여, 실제 확인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정보(위험정보 등)제공은 저수조 청소 등 밀폐공간작업 등에 대해 사전에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를 메일로 안내하는 단계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평가표'라는 양식을 통해, 이행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기관은 안전보건교육 장소 제공에 대해서, 이를 수급업체에게 안내하는 활동이나 자료 등이 없어 수급업체가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관에서 전사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에 대한 계획이나 활동 전개가 없어, 소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생시설의 경우, 본부 구내식당 휴게실을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다소 작은 것으로 보이며, 비품이나 시설 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보건정보(위험정보 등)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따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공하여야 하나, 메일의 압축파일 형식으로 일괄 제공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안전보건정보(위험정보 등)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의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평가표'와 밀폐공간의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작업허가서의 경우에는 그 양식이 충분한 내용을 다 담지 못해, 관련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에 따라, 기관은 안전보건교육 및 위생시설 지원에 대한 안내자료를 전사적으로 계획·제공하여, 수급업체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부족한 수급업체의 휴게시설의

경우에는, 현장 실태를 확인하여, 이를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가이드’ 이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보건정보(위험정보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공하였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 지침이나 계획 등 절차에 반영하여, 실무자들이 누락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밀폐공간작업의 안전보건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 전 수행하는 작업허가서는 그 내용을 보강하여, 추후 질식 및 중독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현장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시행규칙 35조(도급시 산업재해예방)」와 「지침서」(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활동)에 따라 수급업체에게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위생시설 등 지원,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있는 ‘안전서약서’의 별지 안내서를 통하여 수급업체에게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현장은 회의실과 휴게실 등을 마련하여, 수급업체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휴게시설 관리대장’과 담당자 지정을 통해 청결하게 관리하고 의자, 책상, 냉난방시설 등 비품을 적절히 갖추어 놓았다. 특히, 경기개발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자 휴게시설 안내’라는 자료를 제작·작성하여 수급업체가 휴게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수급업체의 특별교육 확인에 대해서, 경기개발원은 작업허가서 양식과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있었으며, 이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특별교육을 별도로 수행하여 보완하였다.

다만, 대전본부는 ‘안전서약서’의 별지 안내서 외에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위생시설을 수급업체에게 안내하는 홍보자료 등이 없으며, ‘안전서약서’에 내용도 간략히 적은 정도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특별교육 실시 확인 및 환류활동에 대해서는 기관의 작업허가서 양식에 ‘안전교육’으로 기재되어, 차후 정기안전보건교육과 혼동되어, 특별교육 확인 등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안전보건정보(위험정보 등)를 해당 작업(저수조 청소 등) 수급업체에게 제공한 명확한 근거(문서)가 없었다.

이에 따라, 현장은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위생시설을 수급업체에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및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대해 수급업체가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의 규정, 지침, 작업허가서 양식 등을 검토하여 해당 활동이 현장에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본부와 협의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보건정보(위험정보 등) 제공에 대해서도 문서 형식으로 명확하게 수급업체에게 제공되었다는 근거를 남기도록 양식을 개선하거나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규정 및 시행규칙, 기준 등을 위험의 사각지대와 실무의 장애가 없도록 기관의 특성 및 직제규정 등을 반영하여 검토·개정하고, 이를 부장급 이상의 상위 직급의 결재를 통하여, 전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를 계약담당자, 안전담당자 모두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본부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교육하여 현장작동성 제고 필요
3. 현장은 도급사업의 현황관리를 본부 제공 양식을 통해 바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혼재작업 여부, 작업계획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위험기계기구 등을 추가(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여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도록 개선 필요)

2 「안전수준」 범주 심사

1. 작업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작업장 안전관리

【1】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노동자 및 이용국민이 사무실, 작업장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출입문 및 비상구 유지·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실행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현장은 기본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 복도 및 통로 상에 불필요한 물건이 적치되어 있지 않고, 문서고와 창고 등의 바닥에는 물건과 자재 등이 보이지 않는 등 근로자가 이동 중에 넘어짐 및 충돌 사고가 없도록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휴게시설에 대해서, 대전본부는 공간의 제약상 사무실의 파티션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최대한 사무실과 구분되도록 입구에 커튼을 설치하고, 안마의자 등을 비치하였으며, 경기개발원의 경우에는 다수의 휴게시설과 충분한 비품 등을 비치하였다. 비상대피로 안내는 층마다 부착되어 있고, 안전보건표지는 현장 여러 곳에 끼임주의, 화상주의 등 장소 및 작업, 위험요인 등에 맞게 부착되어 있었다. 특히, 경기개발원의 경우에는 비상대피로의 방향을 바닥에 화살표 선으로 그려놓아 직관적으로 대피를 용이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저수조 상부 및 옥상에 고정형 수직사다리에는 잠금장치와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작업인원 외 근로자가 올라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 한다)에 대해서, 대전본부는 체험장(교육장)에 대부분 가정용 생활용품(세제 등) 등을 교보재로 비치하고 있었으며, 경기개발원은 화학물질 취급장소에 사용 화학물질의 MSDS비치와 경고표지를 부착하였다. 개인보호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시행규칙」제28조(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따라 현장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개인보호구 비치대장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다. 특히 경기개발원은 최근 구조용 송기마스크를 구비하여, 개인보호구함에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다만, 대전본부의 경우에는 문서고 및 창고 등에 이동식 사다리가 비치되었으나 주변에 안전모 등이 없으므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 시, 근로자가 안전모 착용이 미비하여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MSDS에 대해서, 지역본부는 주로 소량의 가정용 세제를 교보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세정제(오븐크리너 등)는 화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MSDS 조치를 수행하고 교육하거나,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처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경기개발원의 경우에는 일부 세정제, 세제 등을 MSDS 경고표시가 없는 생수병 및 우유 용기에 사용하고 있고, 실습실에서 사용하는 IPA용기의 경우 산안법에 충족하는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 또한, MSDS는 국문을 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영문으로만 비치되어 있어, 근로자가 신속하게 인지하여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대해서, 대전본부의 경우에는 안전모가 '17~19년도 사이에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되어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로 신체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경기개발원은 실습실에서 'IPA(이소프로필알콜)'를 사용함에 따라 환기장치를 설치하였으나, 캐노피형으로 교육·훈련 시 근로자 호흡 범위를 해당물질 증기가 통과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대전본부는 이동식 사다리에 대해서, 공간의 제약이 없다면, 말비계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이동식 사다리 비치 장소 근처에 비치하고 2인 1조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을 제외한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다른 MSDS 경고표지나 문구 등을 반드시 부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인보호구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교체 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IPA 등 물질은 환기장치의 종류에 따라 노출여부를 검토하여 개선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직업병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공간 제약이 없을 시 말비계 등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모를 사다리 비치 장소 근처에 비치하고 2인 1조로 작업
2.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는 관련 법에 의거 MSDS 경고표지나 문구 등을 부착
3. 개인보호구 자체 교체 기준 수립(주기적 교체 필요) 및 화학물질별 환기장치의 종류에 따라 노출여부 검토 필요(환기장치 개선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방독마스크 지급 포함)

[2]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기)기계·기구·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 위험예방조치를 실시하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이용객의 추락 방지와 시설·설비 등의 붕괴·도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대전본부는 'KEAD 안전점검의 날'에 기계기구 설비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보유한 컨베이어에 비상정지버튼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미사용 전기콘센트 대부분 사용 방지 덮개를 통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전발달센터의 경우, 식기세척기 등 기계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더불어, 대전본부는 사무실 내부, 화장실 등에 비상용 호출벨을 설치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경기개발원은 드릴기, 그라인더, 락, 작업용 그라인더, 컨베이어 등 보유 또는 교보재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의 대상여부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 분전반 충전부에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전기실의 경우 전기작업으로 인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접근거리 표시선을 바닥에 표시하였다. 관계 법령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법정 정기검사 실시와 현장 관리상태 수준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전관리자 주관으로 채용 전 교육에 LOTO(전원 차단조치)를 포함하였으며, 기계실 및 전기실 보호구함에 작동금지 표지(LOTO 등)를 비치하고 있었다.

다만, 대전훈련센터 내 교보재로 활용하는 컨베이어, 식기세척기, 커피머신기, 사다리 등에 대해 목록표 및 점검을 실시한 기록관리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편의점 서비스 훈련 시, 2단 발판사다리를 사용하여 최상단에 적재된 물건을 취급·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경기개발원은 보유하고 있는 컨베이어 설비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임에도 신고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교육실에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기계실 배관 통로로 연결된 사다리에 별도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무단 또는 임의 접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장은 일부 멀티탭이 다른 멀티탭에 연결되는 '문어발식' 사용이 확인되고, 사용하지 않는 멀티탭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감전 및 화재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교육자(대전훈련센터) 및 기계실·전기실 근로자(경기개발원)에 대하여 업무 배치 이후 별도의 LOTO 교육을 실시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전발달센터에서 교보재로 활용하고 있는 기계·기구·설비인 컨베이어, 식기세척기, 사다리, 포장기 등에 대해, 방호장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관리하고, 교육생 및 근로자 끼임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보건표지 부착이 필요하다. 그리고 2단 발판사다리 사용현장에서 안전모를 필수로 비치 및 착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2인 1조 작업 등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고한다. 또한, 2단 발판 사다리보다는 말비계로 교체하여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더불어, 경기개발원은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조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저수조 주변 및 작업자 접근 가능 구역에 법적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기계실 배관 통로의 사다리에 잠금 및 접근통제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추락 및 무단 진입 위험을 제거하길 바란다.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멀티탭의 다중 연결을 제한하여 각 전열기구 및 고출력 장비에 대해 별도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도록 전기배선 및 설비 상태를 개선하고, 사용하지 않는 멀티탭에 덮개를 설치하여 감전 및 화재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 및 작업자 관리 측면에서는 기계실·전기실 및 교육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배치 후 반드시 LOTO 절차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를 기록하며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길 바란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기계·기구·설비(컨베이어 등)의 방호장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보건표지 부착 필요
2. 저수조 주변 및 작업자 접근 가능 구역에 법적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 설치 및 기계실 배관 통로의 사다리에 잠금, 접근통제 시건장치 등 추락재해 예방조치 필요

【3】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핵심가치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화재·누출 사고 예방과 노동자 중독·질식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현장은 수립한 소방계획서에 따라 상반기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경기개발원의 경우 생활관 입소 훈련생 및 사감 대상으로 자체 소방훈련교육을 통해 화재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었다. 현장확인 결과 비치된 소화기 대수 및 종류, 점검 기록관리, 내용연수 등이 적정하였고, 화재 대피용 긴급마스크, 일반방독면 등 화재 대비용 보호구 등을 비치하여 화재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행하고 있었다.

경기개발원은 화학물질 취급 교사 및 시설정비 업무자의 작업공간 및 작업내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MSDS 목록화를 통해 안전관리자 주관으로 MSDS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급 교사 면담결과 유해위험성에 대해 적절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질식 위험공간으로 파악·검토된 기계실 저수조에 대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설파트장(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주관 기계실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 구조훈련을 실시하여 유해위험성을 주지하였다.

다만, 경기개발원은 건물 내부에 화재 대피용 긴급 대피 마스크 및 구조용 손수건 등의 비치가 필요해 보이며, 경비로봇 등이 건물 내외부를 순찰하고 있으나 관련한 소화대책에 대해 검토·관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기계실 가스 밸브에 적정한 가스범위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인화성물질을 취급하여 전기설비를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실과 3D프린터실에 대해 폭발위험장소 적용여부 검토 및 현황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더불어, 3D프린터실의 국소배기장치 후드(외부식 상방 흡인형)의 제어풍속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기록관리 하지 않았고, 상주 수급업체 근로자가 사용·보유하는 화학물질의 MSDS 교육을 실시하거나 검토한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전기실 UPS실(이산화탄소 소화기), 전기실 피트실, 기계실 집수정 2곳, 기계실 배관, 전산실(하론소화설비 설치 시) 등의 질식재해 위험이 우려가 있는 공간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 게다가, 보유하고 있는 복합가스 농도측정기의 조작방법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에 대해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수립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에 프로그램 조직

및 운영, 보유 측정장비 현황, 환기장치 보유현황 또는 대여현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개발원은 장애인 훈련생의 출입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설치된 매립형 소화기 바닥 등에 색채 및 표시를 통해 화재 등 위험사항 발생 시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건물 내부 주요 동선 및 훈련장 인접 구역에 화재 대피용 긴급마스크와 구조용 손수건을 별도 비치하길 바란다. 더불어, 경비로봇 등이 건물 내외부를 순회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해당 로봇이 접근하는 구역의 화재대책 및 소방설비 가시성·작동성에 대해 검토를 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길 바라고, 기계실 가스 밸브에는 가스범위 및 위험표시를 표기하여 작업자 및 비상상황 대응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3D프린터실의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운전상태(풍속, 압력, 필터상태 등)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함으로써 실제 환기성능이 설계기준 및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급업체 근로자의 MSDS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이수 현황을 문서화하고, 교육 대상자·내용·시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공간에 대해 사용위치, 장소, 작업 등을 조사하고, 보유한 복합가스농도측정기에 대해, 측정기기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방법을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수립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대해 「안전보건경영지침서 - 13.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평가 및 판정기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수행하여 관리한다면, 보다 내실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설치된 매립형 소화기 바닥 등에 색채 및 표시를 통해 화재 등 위험사항 발생 시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2. 기계실 가스 밸브에는 가스범위 및 위험표시를 표기하여 작업자 및 비상상황 대응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3. 현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공간에 대해 사용위치, 장소, 작업 등을 조사하고, 보유한 복합가스농도측정기에 대해, 측정기기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방법 등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 필요

【4】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핵심가치

기관은 고위험 작업 수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허가제도와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현장은 기관의 규정 제25조 및 「시행규칙」제27조(안전작업허가제), 「지침서」(안전작업허가)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담당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이행하고, 이를 안전담당자(대전본부) 및 안전관리자(경기개발원)가 받아, 해당 작업의 수급업체로부터 작업허가서, 수시위험성평가 등을 제출받고 확인하고 있다. 작업중지요청제는 「규정 제31조(이사장의 작업중지)」, 「제32조(임직원의 작업중지)」 및 「시행규칙제34조」(작업중지)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은 작업중지에 대한 이행 실적은 없으나, 본부의 ‘작업중지요청제 활성화 계획 알림’을 통해 이행과 활성화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인지하였다. 또한, 본부의 ‘폭염 등에 따른 현업근로자 및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작업중지 등 사고예방’이라는 공문을 통해 배포된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관련 자료와 자체적으로 제작한 ‘작업중지 포스터’ 등을 관할 훈련센터(대전본부)와 개발원 실내에 부착하였으며, 별도로 기관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작업중지 요청제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였다.

외부 출장업무에 대한 사고예방조치에 대해서, 현장은 기관 규정 「제55조(기타안전관리)」, 「시행규칙 제60조(차량안전관리)」 및 「제60조의2(출장안전 및 교통사고 등 예방조치)」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제66조」(안전점검의 날)의 점검결과표를 활용하여 매월 업무용 차량과 직원들의 개인보호구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대전본부는 ‘직원 차량운전 교통사고 대처 및 예방지침 안내’(2025. 4. 3.)에 따라 관리책임자(본부장), 직원 등 16명이 ‘출장시交通安全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남기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경기개발원의 경우에는 훈련생 등을 인솔하는 ‘공동체 및 사회성 훈련’이라는 외부업무에 대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 등 조치를 수행하였다.

다만, 안전작업허가제의 경우, 안전보건수준평가, 위험성평가 등과 같이 이행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절차를 정리한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아, 현장 안전실무자와 안전관리자의 이해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1회성 또는 단발성의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 위험성평가 등이 제외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1회성 또는 단발성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제, 안전보건수준평가,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이행 등 안전보건조치가 누락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도급사업에 대한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평가 선정기준 안내’(2024. 10. 23.)에는 수급업체에게 작업허가서를 시행하고 수시위험성평가를 같이 받도록 되어 있으나, 대전본부의 도급사업 관련 자료 내 작업허가서가 없이 수시 위험성평가표만 있었으며, 경기개발원은 작업허가절차와 작업계획서 확인 등에 대해 일부 인원이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기관의 지침 등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중지 요청제에 대해서, 대전본부는 작업중지 포스터가 관할 훈련센터에만 게시되어 있어 작업중지요청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지역본부 전 직원으로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부 출장업무 사고예방조치에 대해서는 규정, 지침, 계획 등이 교통사고에만 중점이 맞춰져 있으며, 특히, 경기개발원의 ‘공동체 및 사회성 훈련’ 시 시행된 안전보건교육은 훈련생만 1시간 정도 수행되고, 이를 인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관 및 현장은 안전작업허가제가 다른 안전보건조치와 종합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등을 수립하여, 현장 안전실무자, 안전관리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작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1회성 또는 단발성 위험작업에 대해서도 안전작업허가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업중지요청제 홍보물 부착 등도 교육 및 훈련장소만 아닌, 전 건물에 부착하여,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기 바란다. 그리고 출장업무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 방문하는 사업장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규정, 지침 또는 계획 등을 교통안전과 산업안전에 모두 포함하여 수립·보완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개발원의 ‘공동체 및 사회성 훈련’ 시에는 안전보건교육에 직원들도 참석하도록 하여, 훈련생과 직원 모두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기관 및 현장은 안전작업허가제가 다른 안전보건조치와 종합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등을 수립하여, 현장 안전실무자, 안전관리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작동성을 강화 필요
2. 1회성 또는 단발성 위험작업에 대해서도 안전작업허가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필요
3. 방문하는 사업장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규정, 지침 또는 계획 등을 교통안전과 산업안전에 모두 포함하여 보완 필요

3 「안전성과」 범주 심사

【1】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완료 여부와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개선 이행 심사〉

해당없음

〈개선 이행 노력〉

해당없음

【2】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내용, 재해현황 및 다음 연도 주요 계획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주요 안전활동의 지속적인 이행과 발전을 통해 안전경영책임을 정착시켜야 한다.

심사의견

〈안전활동 추진 실적의 적정성〉

기관은 장애인의 직업생활 지원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기관은 작업장 32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3개소를 포함하고 있다.

기관은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안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대내·외적인 안전경영 여건,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추진전략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주요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로 구분하여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기관에서 수행한 안전 활동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 관리로 표준화된 안전 업무 이행, 중대재해 등 긴급재난·위험 대처 계획 이행 점검, 위험성평가 체계화, 직원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고도화, 훈련기관 체험형 안전교육 훈련, 작업중지요청체 운영, 도급 등에 따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 준수 점검 등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에서 기술한 사업들은 '24년도에 수행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본부 및 전국 직업능력개발원에 적용하고, 위험성평가 전문가 교육 실시, 기관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아차사고 발굴대회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1건의 사망재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관리감독자인 운영지원부장 하부조직에 편성된 안전보건팀은 기관장인 경영책임자와 관리책임자인 기획관리이사의 직접적인 보좌를 통해 기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담 안전보건부서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직 편성과 이에 대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언급된 안전 추진 체계 고도화 등에 대한 안전활동 내용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주무부처 보고용으로 작성되어 상세한 활동내역이 기술되지 않아 적절한 평가가 제한된다. 향후 보고서 작성 시에는 안전보건경영책임보고서에 따른 안전활동 결과가

P-D-C-A 기반에 의거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임원 등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기관은 기관장 및 임원 등의 안전활동 성과측정을 위한 목표를 개인이 아닌 조직단위로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기관의 평가항목은 사고발생 보고 준수 실적이며, 사고 발생 보고 준수 100%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기관은 안전활동 성과를 인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안전활동 성과는 성과평가(전체 평가의 가중치 60%)에 6% 반영하고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는 조직단위로 인사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확인된다. 다만 성과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문책규정, 업적평가 지침 및 인센티브 제도 등 직접적으로 인사평가 등에 보상하는 체계 마련과 이를 통해 임원과 전 구성원 모두가 안전성과 달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은 정기적인 성과평가와 감점 기준을 적용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감점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아울러 외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안전활동 수준평가와 정부경영평가를 함께 활용하여 다각적인 점검 체계 도입과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사고 발생 보고 준수)를 안전문화 확산노력 지표(교육 참여율, 캠페인 참여도, 부적합 개선활동 실적 등)로 보완이 필요하다.

〈안전경영책임 활동에 대한 자체심사(Audit) 실시〉

기관은 안전보건책임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체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자체심사는 기관이 안전보건계획의 이행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기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기관은 기관의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경영책임 계획 내용에 따른 연간 심사계획 수립, 심사 프로그램 작성, 심사원에 대한 자격부여, 외부전문가 활용 및 타부서와의 교차심사, 부적합에 대한 재발방지 관리 등 P-D-C-A 기반의 순환적 심사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실적에 대한 주무부처 점검 및 후속조치 계획수립 여부〉

기관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 요청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기타사항〉

기관의 현장검증 대상은 전남직업능력개발원으로 호남지역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원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 직업훈련기관이다. 검증부분은 교육장, 발달장애인 직업체험관, 기계실 및 전기실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기관은 안전보건경영방침 게시, 법령의 요지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관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중앙계단 추락방지망 설치 및 안전난간 보강(상부난간 추가 설치), 교육장 및 체험장 등의 모서리에 완충재 설치 등 교육생의 안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전기실 및 기계실에 접지가 되지 않은 콘센트 사용, 기계실에서 저수조로 이동하는 통로 상의 장애물(수평 설비배관)은 감전사고 및 넘어짐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특정 작업자만 근무하는 기계실, 전기실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보강이 필요하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성과측정 결과를 통한 인사평가 보상(문책규정, 인센티브 등) 체계 마련
2. 콘센트 접지 및 통로상 장애물(배관 등)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필요

[3]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대국민, 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하나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이 종사자를 위해 추진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

기관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위험요인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경진대회 개최, 사무직 업무와 장애인 직업 훈련 지원 등 신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활동인 건강한 일터 캠페인 개최, 안전·보건·환경(SHE)우수사례 공모전, 아차사고 발굴대회, MSDS작성 및 전기안전업무능력향상과정, KOSHA-MS 내부심사원 양성과정 등 다양한 캠페인·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에 기술한 활동은 안전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임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므로 일부 구성원 대상이 아닌 기관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이 대국민(종사자 제외)을 위해 추진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

기관은 장애유형별 대피방법 등 장애인 노동자 재난안전 가이드를 제작하여 장애인 노동자 채용 사업장에 책자 형태로 배포 등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안전문화 확산 활동 노력(①과②)에 따른 성과〉

기관이 수행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과 관련하여, 기관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종사자 및 대국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안전문화 내면화 단계를 지향함에 따라 안전문화의 이해, 안전문화 사례, 안전리더십 등 선제적으로 안전문화리더를 양성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 대피방법 등 장애인 노동자 재난안전 가이드 배포 등을 통해 재해율 전년 대비 감소와 시설 내 훈련생 및 내방객 사망사고 zero를 유지하고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임원 등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도구 개발 필요

【4】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의 사고사망 예방 등 안전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사고사망 예방 실적〉

기관은 2025년 산업재해통계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가 없었다.

〈사고사망 감소 성과〉

기관의 사고사망 승인은 심사 대상연도 직전 3년('22년~'24년) 평균 0명에서, '25년 0명으로 동일하였다.

〈사고사망 대응 노력도〉

해당없음